第147回國會
(閉 會 中)

5·18光州民主化運動 眞相調査特別委員會 會議錄

第32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12月30日(土)
場 所 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委員會運營에관한件

審査된案件
1. 委員會運營에관한件 ····· 3面

(10時17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2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眞相調査特別委員會를 開議합니다.

오늘은 崔圭夏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出席하도록 하여서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眞相에 관한 證言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專門委員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報告를 해주시겠습니다.

○專門委員 陳在勳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前大統領 崔圭夏씨에 대한 89年12月30日 當聽聞會에 出席하여 證言해 달라고 하는 召喚要求에 대해서 89年12月29日 오후에 證人으로부터 出席할 수 없다는 回信이 왔습니다.

그 回信內容은 配布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

(參 照)

回 信

먼저 그동안 國政調査活動에 盡力하여 오신 國會 5·18光州民主化運動眞相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과 委員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衷心으로 敬意를 表하면서 1989年12月23日字 「광운특제135호」貴翰으로 本人에게 12月30日 貴特委에 出席 證言할 것을 要求하신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回信합니다.

本人은 1980年5月 光州地域을 中心으로 일어났던 不幸한 일에 대하여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으며 특히 幽明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遺族들에게 恪別한 吊意와 慰問의 마음을 간직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光州民主化運動(以下'光州問題'라 함)에 대한 公正하고 順理에 따른 調査가 이루어지고 傷處와 아픔의 迅速한 治癒로 國民化合의 바탕을 다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念願하면서 眞相調査에 協調하겠다는 本人의 意思를 累次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本人은 한때 國家의 維持·守護 責務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그 言行과 處身에 극히 愼重을 期하는 것이 道理라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貴特委의 뜻을 尊重하면서 이같은 本人의 立場에서 光州問題의 眞相調査에 도움이 되는 方法이 果然 무엇인지를 深思熟考하여 왔습니다.

貴特委에서 要求하고 있는 本人의 출석 證言만이 光州問題의 眞相調査를 위한 唯一無二한 方法일 수는 없고 이미 現場에서 發生한 事件들의 內容과 그 展開過程에 관한 關係人士들의 詳細한 證言과 說明이 이루어져 그 眞相이 대부분 밝혀진 지금에 와서는 本人의 出席 證言이 자칫하면 새로운 政治的 論爭만 불러일으켜 國民化合을 이룩하자는 國民의 뜻에도 어긋날 憂慮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關聯된 國政의 重要 事項이나 問題에 관한 前職大統領의 陳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憲政의 慣行이나 先例 그리고 國家에 미치는 對內外的인 影響 등이 考慮되어야 하며 이러한 考慮는 國會出席證言에 있어서는 더욱 緊要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여러 차례에 걸쳐 國益을 損傷시키지 않으면서 光州問題의 實質的인 眞相調査에 도움이 될 수 있는 "適切한 方法"을 模索하여 줄 것을 要望하면서 이를 爲한 對話와 協議를 貴特委에 提議해 왔으나 아무 反應도 없이 昨今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차 지난 12月15日 靑瓦臺에서 있었

던 盧大統領과 3黨總裁會談에서 지난 時代의 整理를 爲한 與野間 合意가 이루어져 本人은 이와 같은 成果가 그間 여러 政治 懸案들의 妥結을 이끌어 낸 對話와 妥協이라는 民主的 精神의 發現이라고 생각되어 歡迎하였습니다. 아울러 本人의 國會證言問題에 관하여도 '與野重鎭會談에서 論議한다'고 되어 있어 곧 與野重鎭會談에서 適切한 方法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本人의 證言問題가 順理的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突然히 12月30日 貴特委에 出席하여 證言하라는 從前과 同一한 形式의 出席要求書만 送付되어 옴으로써 本人은 失望感과 함께 當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機會에 지금까지 國會出席證言에 관하여 本人이 생각하여 온 問題點과 그 解消方案으로서의 對話를 提議한 背景을 다시 한번 說明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前職大統領이 在職中의 일로 인하여 國會特委에 出席 證言하는 것은 三權分立의 原則에도 符合되지 않을 뿐 아니라 大統領中心制下에서의 國家經營의 基本과도 直結되는 重要한 問題라고 本人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40年憲政史에도 그러한 先例가 없었고 先進外國에도 그러한 例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本人으로서 本人 自身이 이와 같은 先例를 만들어 後代 大統領들에게 負擔을 줄 權利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大統領의 過去 統治行爲의 當否에 대하여는 司法府의 判斷對象이 아니라는 大法院 判例의 趣旨는 國會特委에서도 尊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觀點에서 本人은 지금까지 우리 憲政의 慣行이나 先例 그리고 國內外에 미치는 影響을 考慮할 때 前職大統領의 貴特委 出席證言은 國益에 損傷을 줄 憂慮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어 왔습니다. 특히 國益損傷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는 아무런 事前豫防裝置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現在의 狀況下에서는 더욱 問題가 있음을 指摘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大統領의 國政行爲에는 많은 國家機密이 內包되어 있어 이에 관한 陳述은 愼重을 期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國法上 公務員의 職務上 秘密에 대하여는 退職後에도 이를 漏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民事訴訟節次에서도 前職 大統領은 本人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면 그 職務上의 秘密에 관하여 法院이 證人으로 訊問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 있는 關係 規定의 內容도 本人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前職大統領의 過去 在職中의 國政行爲에 관한 國家機密與否의 判斷은 그 自身만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民事訴訟法에서 前職大統領의 職務上 秘密에 관한 證言의 경우에 本人의 承認을 얻도록 規定한 것으로도 뒷받침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大統領 在職中의 國政行爲와 관련된 國家機密이 證言의 形態로 無節制하게 露出되어서는 안된다는 國法上 精神은 尊重되고 또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前職大統領의 在職中 國政行爲에 관한 證言 問題는 國益損傷의 素地가 있으므로 그 陳述方法에 관한 深思熟考와 充分한 事前協議가 必須不可缺하다는 데는 異論의 餘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貴 特委에서 當時의 公的 業務와 관련하여 調査할 事項에 대하여는 이미 該當 實務責任者들이나 機關長들 各級軍部隊長들과 戒嚴司令官 關係 國務委員들 그리고 國務總理의 證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以上은 貴 特委側과 本人間에 對話와 協議를 통하여 '適切한 方法'이 模索되어야 한다는 몇 가지 理由를 例示한 데 不過합니다.

또한 貴特委는 光州問題의 眞相調査를 위하여 特委의 出席 證言에 局限하지 않고 書面質疑·書面答辯 方式을 採擇한 先例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與件과 事情이 같을 수야 없겠지만 진실로 眞相 調査에 도움이 되고 同時에 國益의 損傷을 防止할 수 있는 方法이 있다면 그 形式은 그리 重要하지 않다고 봅니다.

順理와 協議에 바탕을 둔 適切한 方法을 찾아내기 위한 眞摯한 努力이 없이 國益守護

를 위해 필요한 裝置의 마련도 되지 않은 狀況에서 無條件 國會 出席證言만을 要求하는 것은 本人으로서도 선뜻 納得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번 靑瓦臺會談에서 보여 준 對話와 妥協의 精神에도 符合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光州問題의 眞相調査에 協調하겠다는 本人의 생각에는 變함이 없으며 國益이 損傷되지 않고 眞相調査에 實質的으로 도움이 되는 方法이 있다면 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本人의 생각으로는 書面質疑·書面答辯 方法이 그러한 範疇안에 속할 수 있다고 보며 貴特委가 그와 같은 方法을 受容하여 早速히 質疑書를 보내주신다면 可及的 빠른 時日內에 本人 나름대로 誠意를 다한 答辯書를 作成하여 提出하겠습니다.

끝으로 貴特委 委員 여러분과 國民 여러분에게 本人의 國會出席證言問題로 心慮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悚懼스럽게 생각합니다.

1989年12月29日

최 규 하

……

報告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제 들으신 대로 대단히 유감된 回信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聽聞會가 光州民主化運動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진지하게 調査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前 大統領인 崔圭夏씨가 나오셔서 그가 해야 풀릴 고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그런 부탁을 했고 同行命令狀도 보냈고 또 이번의 領袖會談에서 두 前 大統領의 證言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決議를 해 주셔서 그 뜻에 따라서 다시한번 崔圭夏大統領에게 나오셔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신 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여러분앞에 있는 서한 대로의 答辯이 왔습니다.

委員長으로서 퍽 유감됩니다. 제가 친히 찾아가서 뵈었을 때 사실 우리 專門委員님까지 세번 찾아가서 나오시기를 부탁했는데 제가 가서 議論드렸을 때 막바지에 내가 꼭 나가야 한다면 나가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막바지입니다.

우리 聽聞會가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나오셔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나오시지 못하는 그분의 논리를 보면 前大統領의 前例가 없다. 혹은 事前協議를 좀 해주었으면 좋을텐데 하지 않았다. 大統領에게는 秘密이 많은데 이 秘密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領袖會談에서도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사실 이제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협의를 했고 우리 全斗煥 前大統領도 나오시는 그런 결단을 했고 해서 나오시기를 기대했는데 國民의 뜻을 대변하는 또 온 國民이 기다리는 이 때에 나오시지 못하는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회신이 왔기에 이것을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은 停會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우리 光州特委 全體會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停會를 宣布합니다.

續開는 10時40分에 우리가 늘 하던 會議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24分 會議中止)

(10時42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朴昌熙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文東煥 康祐赫 委員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康祐赫委員 康祐赫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1. 委員會運營에관한件

(10時44分)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委員會運營에 관한件을 上程합니다.

오늘은 崔圭夏 前大統領의 國會不出席에 대한 委員님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하는 것을 서로 의견교환하기로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辛基夏委員 우리나라 5千年 歷史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한 대목인 1979年10月26日 이후의 이른바 第5共和國 시절은 그야말로 암울했던 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80年5月을 전후해서 당시 全羅南道 光州市 일원에서 일어났었던 政府權力에 의한 良民의 학살과 인권침해의 사례는 이는 어느 누구도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歷史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또한 이는 歷史發展의 하나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도 반드시 밝혀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10年이 지난 현금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한 證言者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주었지만 그중에서도 1979年 10·26이후 大統領 權限代行과 大統領의 위치에 있었던 崔圭夏씨의 證言은 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우리 光州特委에서는 崔圭夏씨를 證人으로 채택해서 19번에 걸치는 聽聞會過程중에서 6回에 궁해서 出席要求를 했고 또 이에 대한 出席意思를 거부해옴에 따라서 소정의 法節次에 따라서 2번에 걸치는 同行命令을 발한 바 있습니다. 國憲을 수호하고 國益을 보호해야할 大統領의 權限代行 또는 大統領의 직위에 있는 분들이 정작 國家의 이익을 보호하고 國民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을때에는 직무를 유기한 채 그 大統領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한 분이 역사적 진실을 밝혀서 國家的 이익과 國民的인 이익을 되찾아서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확립해야 할 이 시점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國民意思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번에 걸치는 聽聞會 6번에 걸쳐서의 出席意思를 거부해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우리 特委에서는 崔圭夏씨가 前職大統領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特委委員長이 1回 同僚委員 民主黨側幹事인 吳景義委員이 1回 방문해서 정중한 예의를 표함과 아울러 출석을 촉구한바 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러가지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구실을 붙여 가면서 현금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政治圈에서는 4黨의 領袖들이 모여서 암울했던 과거의 청산 이른바 第5共和國時代를 종언을 고하고 1990年代를 맞으면서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합의가 있어서 1980年代가 다 지나기 전에 5共和國을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자 하는 의미로 여기에 모였는데 1990年代를 이틀 앞둔 현금까지 아직 그러한 우리의 國政遂行에 비협조적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5共時節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前職大統領 全斗煥씨가 내일 우리 國會聽聞會에 나와서 證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고 또 證言이 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第3者的 위치에서 명백히 證言을 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이 崔圭夏씨의 證言拒否는 國民을 대표하는 우리 國會의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우리 國會에서의 出席拒否 또는 同行命令拒否의 내역을 일일이 나열해 보면 1988年8月12日 第3次 當委員會에서 崔圭夏씨를 證人으로 선정했고 88年11月9日 第5次委員會의 議決로 11月18日字로 證人出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8年 11月18日 第7次 委員會의 聽聞會에 不出席하였습니다. 그 이후 88年 12月10日 同年 12月19日字로 證人出席을 요구하는 委員長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當日 聽聞會에 出席하지 아니하였으며 88年 12月16日에는 文東煥委員長이 직접 방문해서 出席證言을 요청한 바 있으며 88年 12月23日과 89年 1月12日에도 國會出席證言을 요청하는 委員長 명의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9年 1月23日에는 89年 2月26日字 證人으로 出席을 요구하는 委員長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해서 1月26日에는 當 委員會의 결의로 同行命令狀을 발부 집행하였으나 同行을 거부하였습니다. 89年 2月15日에는 89年 2月22日字로 證人으로 出席을 요구하는 委員長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出席하지 아니하여 2月22日에도 同行命令狀을 발부 집행하였으나 同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9年 12月23日에는 89年 12月30日字 證人出席要求書를 발부하였으나 出席하지 아니하였으며 不出席事由書로 보이는 서한에 의하면 出席證言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國會의 權威를 위하여 告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證人으로 채택된 崔圭夏씨의 當 委員會에 대

한 言行을 보면 當 聽聞會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 法律 第12條 同行命令 거부에 관한 行動은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第13條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國政調査의 일환으로써 그 중에서도 역사의 걸림목인 제일 중요한 光州 5·18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협조해야 할 崔圭夏氏의 證言은 全 4300萬 國民 아니 全 人類의 분노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當 委員會에서는 이러한 法律의 위반으로 崔圭夏證人을 告發할 것을 動議함과 아울러 政府側에 대해서는 이러한 歷史的인 큰 罪를 진 崔圭夏證人을 구속 기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도 아울러 動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辛基夏委員으로 부터 告發動議가 있었습니다. 同意하십니까?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辛基夏委員 내가 아까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이라고 그랬는데 國會에서의 證言및鑑定에관한法律로 고칩니다. 12條 13條…

○委員長 文東煥 再請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動議가 成立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張石和委員 저도 再請하는 民主黨의 張石和委員입니다. 저도 再請을 하는 입장이지만 告發함에 있어서 告發事實이 特定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辛基夏委員의 告發중에 告發事實이 몇個인지 이번에 不出席한 것에 한한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 명확하게 진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告發事實에 관해서 보충하고자 합니다.

○辛基夏委員 6個 사실… 전부 다했습니다.

○張石和委員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辛基夏委員님 말씀은 지금 6個 사실에 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6個 사실에 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여섯번 出席要求에 불응했고 또 두번 同行命令에 불응 했으면은 여섯번 出席要求한 사실에 관해서는 여섯번 不出席罪가 됩니다.

또 두번 同行命令不應罪에 관해서는 또 두번 國會侮辱罪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번 不出席罪 또 두번 國會侮辱罪 이것이 전부 다 여덟번 행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告發이 되어야 합니다.

○辛基夏委員 여섯번의 不出席罪 同行命令不應罪 두번입니다.

○張石和委員 그리고 지금 國會 不出席罪가 되느냐 안되느냐 물론 民正黨에서 異論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罪가 안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辛基夏委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發言을 한다고 하면 이 崔圭夏씨는 權力分立理論을 들고 나옵니다. 權力分立理論을 들고 나오는데 崔圭夏씨의 權力分立理論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國民代表機關인 國會에서 證言을 하는 것 까지도 權力分立理論에 의해서 해결하라 이런 말씀인데…

○委員長 文東煥 議事進行發言으로써 정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小委員會가 생길 테니까 그때 자세한 것은 참고로 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事進行發言에 局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趙贊衡委員이 요청했었습니다.

○趙贊衡委員 우선 告發에 대한 法律的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왜냐 하면…

○委員長 文東煥 그것은 앞으로 小委員會 구성된 뒤에 얘기해 주세요.

○趙贊衡委員 지금 崔圭夏 前大統領에 대한 告發에 관해서 그것을 지금 議決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動議를 했는데 告發에 대한 動議는 그것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15條를 보면 國會는 證人·鑑定人 등이 第12條 第13條 또는 第14條第1項 本文… 다시 말해서 이 出席拒否나 同行命令拒否罪의 罪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告發은 自動告發입니다.

전체 委員會 議決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委員會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은 과연 崔圭夏 前大統領이 이 不出席의 罪 同

行命令拒否의 罪를 범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 우리가 결의하면 됩니다. 그것이 결의가 되면 告發은 自動告發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하여야 되는 것이니까 결의한 것입니다.

○趙贊衡委員 그래서 혹시 民正黨側에서 이 告發 자체에 반대한다면 그 논리를 파연…

○委員長 文東煥 그런 논리가 나온 다음에 얘기하세요.

○吳景義委員 委員長! 이쪽에서 告發하겠다는 측의 發言權만 주시지 말고…

○金仁坤委員 動議가 지금 나와 있고…

○委員長 文東煥 그러니까 이쪽의 反對發言이나 그런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辛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辛卿植委員 民正黨 辛卿植委員입니다.

지금 崔圭夏 前大統領에 대해서 告發의 動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崔圭夏 前大統領이 告發된데 대해서 우리로서는 좀 부당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特委에서 證人을 채택해 가지고 證言을 듣는 것은 그당시 사태에 대해서 眞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證人으로 여기에 출두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고 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정확한 事實糾明이 될 수 있는가 꼭 本人이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또는 얘기 안하고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문제에 있어서 本人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면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證人이 과거에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가 그 身分 如何에 따라서 本人이 와서 직접 公開的으로 證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크게 봐서 國家的으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告發키로 動議한 崔圭夏 前大統領으로 말할 것같으면 그 분이 前職大統領입니다. 大統領으로서는 이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또 모든 국가에 대한 機能을 수행할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 위치인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에 있어서는 그에 따르는 모든 비밀사항이 國家安危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그 사람이 前職大統領이 현장에서 그 모든 사항을 公開的으로 얘기하게 될 때 그 眞實糾明自體와 또 그것이 미치는 國家的인 여러 가지 安保的인 次元에서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前職大統領에 대한 公開的 證言은 再考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效率的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答辯이라든지 또는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書面으로 質疑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書面으로 答辯하는 것이 사태를 분명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특히 大統領으로서는 前職大統領이든 現職大統領이든 業務上 機密을 공표하는 것은 國民 利益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大法院의 判例도 있고 또 民事訴訟 절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崔圭夏 前大統領에 대한 證人出席은 公開的으로 證言을 청취하는 것보다 書面으로 質疑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하고 또 본인도 書面으로 質疑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하겠다고 理由書까지 제출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不出席에 대해서 告發理由를 말씀하셨는데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12條에 보면은 정당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證人에 대해서 告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崔圭夏 前大統領은 정당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出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해서 委員長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않았다는 그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崔圭夏 前大統領의 證言은 書面質疑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不出席에 대해서 告發하는 것은 法精神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李敏雙委員 말씀해 주세요.

○李敏雙委員 李敏雙委員입니다.

지금 野黨側에서 告發動議가 있었고 또 그 告發事由가 아주 낱낱이 잘 설명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려고 우리 野黨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려고 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한 말씀 議事進行發言을 합니다.

우선 前職 國家元首 前職 大統領을 고발하는 문제는 분명히 우리 憲政史의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역사의 진상을 다루는 光州特委가 이러한 憲政史에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행위를 갖다가 굳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마지막까지 더 우리가 끈질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정당한 사유 여부로 인해서 與·野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내려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고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司法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有權解釋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서 우리 光州特委는 마지막까지 저쪽에서 지금 書面答辯을 해오겠다고 요청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관해서 與·野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美國의 위컴과 글라이스틴에 대해서도 證人訊問 요지를 보냈는데 또 출석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가부간에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불쑥 서면으로 證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崔 前大統領께서도 書面證言도 분명히 證言이 아니냐 꼭 出席證言만이 證言의 효력과 진상에 도움이 되느냐… 마지막 자기의 안타까운 뜻을 표해 왔고 또 빨리 書面質問을 해오면 答辯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겸사겸사 절충하기 위해서 잠시 停會해서 4黨 幹事間에 우리가 이런 歷史的인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노력한 또 우리가 절충을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우리 民正黨에서는 정식으로 停會를 잠시해서 4黨幹事會議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여러가지로 얘기했지마는 다시 돌아온 다음에 얘기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릴테니까 일단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6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續開를 宣布합니다.

우리 幹事會議에서 얘기한 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報告해 드립니다.

民正黨에서는 앞의 주장을 그대로 계속했고 우리는 告發한다는 것을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民正黨에서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서 우리 野3黨끼리 會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더 얘기하실 일이 없으시면… 金仁坤委員님 말씀하세요.

○金仁坤委員 간단하게 지금 辛基夏委員께서 告發動議를 하셨거든요. 그 動議에 贊助動議를 받아주면 하겠습니다. 告發狀作成에 있어서는 歷史的인 사실들이 法律 이전에 기재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法律的인 차원에서도 하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告發內容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各黨에 律士出身들이 한분씩 告發狀作成小委員會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한 결과를 委員長님과 幹事들하고 타협을 해서 告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 주시면…

○委員長 文東煥 먼저 告發與否를 결정한 다음에 小委員會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같습니다.

○金仁坤委員 方法論까지 해서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받아주면 되는 것이에요.

○委員長 文東煥 현재로서는 告發하자는 動議再請이 나왔으니까…

○金仁坤委員 그러니까 告發하자는 것을 찬동하면서 贊助動議를 한 것이에요.

○辛基夏委員 金仁坤委員님의 修正動議에 原則的으로 제가 動議를 하면서 다만 各黨이라는 표현은 지금 民正黨이 퇴장을 해서 民正黨側과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 出席해 있는 委員중에서 政黨別로 幹事들이 추천한 사람을 한 名씩 그래서 세 名 委任했으면 그렇게 提議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坤委員 民正黨도 참가한다고 하면 참가시키고…

○吳景義委員 지금 辛基夏委員님 말씀이나 金仁坤委員님말씀에 動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金仁坤委員님 말씀은 小委員會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그런 내용이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가 會議體가 되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告發을 하기로 합의가 된… 물론 지금 表決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문제는 다시 小委員會를 金仁坤委員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구성을 한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委員長님이 이미 결론을 내려서 宣布된 이후부터는 專門委員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역할과 함께 律士出身 몇 분이 諮問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書類作成하는데 원만하게 하자가 없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小委員會를 또 구성을 해가지고 별도의 會議體가 되어서는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어떨지 본인은 그런 생각에서 金仁坤委員님이 양해를 하시고 받아주시면 그런 방식으로 거기에 諮問役割을 할 수 있는 律士出身들을 소집을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金仁坤委員 융통성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 얘기를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幹事會議를 委員會로 하되 3黨에서 추천하는 律士 세분을 諮問委員으로 해서 같이…

○辛基夏委員 幹事會議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吳景義委員 幹事會議나 小委員會라고 하지 말고 律士 出身 세 분을 各黨에서 추천을 한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하자없이 告發狀을 만드는데 그분들의 諮問을 구해가지고…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決定은 누가 합니까?

○吳景義委員 그 決定은 우리가 여기서 委任을 해주어 가지고……

○委員長 文東煥 委員長에게 一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吳景義委員 委員長께 一任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委員長이 決定해서 告發文을 쓰는데 3黨에서 추천한 律士들의 도움을 얻어서 決定한다 그렇게 結論내리겠습니다.

尹在基委員 말씀하세요.

○尹在基委員 告發內容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特委運營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시피 이 特委에서의 不出席에 관한 告發을 즉시 즉시 해서 不出席에 관한 응징을 늘 해 왔어야 되는데 告發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告發을 늦추어와서 이 特委의 權威를 상당히 損傷시킨 바가 큽니다. 過去의 特委運營에 대한 문제를 指摘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崔圭夏前大統領의 回答書를 보면 書面質疑書面答辯方法의 質疑書를 보내면 答辯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 各黨이 내놓았던 質疑書를 지난번 出席要求書에 同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本人의 誠意가 없어서 아무런 正當한 理由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告發에 動議합니다마는 우리가 告發하는 目的은 處罰을 얻어낸다는 것外에 우리가 調査하고 싶은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委員會가 보냈던 質疑要旨에 관한 것을 陳情事項으로 特委에 넣어서 檢察로 하여금 調査를 할 수 있도록 要請을 더불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不出席罪에 대한 또 同行命令不應罪에 대한 告發과 더불어 우리 特委에 出席하기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檢察로 하여금 우리가 調査하고 싶은 內容을 調査要請을 내서 함께 더불어 檢察로 하여금 崔圭夏씨를 불러가지고 그 調査內容을 밝히고 檢察로 하여금 밝힌 內容이 과연 罪가 되면 處罰하는 方向까지도 우리가 같이 告發하는 것이 實質的인 眞相糾明에 도움이 되는 告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告發內容의 修正動議로 內容修正에 관해서 不出席 뿐만 아니라 우리가 調査하고 質疑코자 하는 要請에 대한 調査 實相의 파악 內容까지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 內容을 諮問委員들에게 參考로 드려서 거기에서 作成하도록 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參考事項으로써 앞으로 諸問하실 분들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張石和委員 말씀하세요.

○張石和委員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된 말씀을 간단히 마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告發에 대한 同議案에 대해서 民正黨에서 反對討論을 했기 때문에 우리 野黨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贊成討論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간단하나마 그래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는데 과연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우리 野黨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가지고 지금 告發하는 것입니다. 왜 정당한 이유가 없느냐 지금 崔圭夏씨는 權力分立理論을 들고 나옵니다마는 이 權力分立理論과 國會에 나와서 出席을 해서 證言하는 問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 의하면 누구든지 國會에 나와서 證言할 義務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現職 大統領은 물론이고 또 崔圭夏씨 같은 前職 大統領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는 이 國民代表機關인 國會에 나와서 陳述하고 證言하는 것은 權力分立理論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權力分立理論도 牽制와 均衡을 主理論으로 하는 것인데 이 牽制權을 發動하는 것이 이 國會의 證言節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權力分立理論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금 崔圭夏씨는 統治權이기 때문에 司法審査 對象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光州에서 그와같은 良民을 虐殺한 것도 統治權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면 大統領이 不法行爲를 했다고 했을때 전부 統治權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司法審査 對象이 안된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會에서 당연히 이것은 불러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또 國家機密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證言할 수 없다 라는 얘기이지만 이 國家機密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이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면 主務部長官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國務總理의 聲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國家機密이기 때문에 證言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節次違反입니다.

그래서 崔圭夏씨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은 전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特委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와같이 여덟個 事項으로 競合犯으로 告發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趙贊衡委員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金光一委員 말씀하세요.

○趙贊衡委員 이것은 法的 節次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國會에서 僞證한 證人을 告發했거나 또 不出席 證人을 告發한 경우에 檢察에서 起訴한 事例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崔圭夏證人에 대해서도 民正黨側의 反論을 들어보면 마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出席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告發을 해서 地方檢察廳에서 不起訴했을 경우 이것은 지금 당연히 訴訟法에 의하면 抗告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高等檢察廳에 그리고 高等檢察廳이 抗告를 棄却하면 또 大檢察廳에 再抗告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抗告權이나 再抗告權은 告發人으로서의 부수된 權限입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것도 이 委員會에서 問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不起訴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 抗告와 再抗告 이것을 이 委員會에서 決議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른 委員會에서 告發한 경우 不起訴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抗告與否 問題에 대해서는 아예 抗告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高檢이나 大檢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로 抗告 再抗告에 대한 決議를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절차가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委員長한테 再抗告權을 委任해 버리면 됩니다.

○委員長 文東煥 諸問委員들이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나 참작을 하겠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은 이제 國會에서 이 特委가 解體가 되면 누가 이것을 執行하는 主體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金光一委員 말씀하세요.

○金光一委員 告發動議가 成立이 되었고 民正黨側에서 反對討論을 했고 또 野黨側에서 贊成討論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告發을 하면 告發을 하게 된 경위와 또 告發을 할때 當 委員會에서 어떻게 犯罪事實을 인정하고 告發하게 되었느냐 하는 경위를 捜査機關에서 즉 檢察에서 調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檢察調査에 捜査資料가 될 가능성이 있는 本委員會의 會議進行을 명확하게 해두고 또 오늘 與黨側에서 제기한 몇가지 問題點 그리고 또 證人으로 召喚당했던 崔圭夏씨 자신의 不出席 事由書에서 제기한 問題點들에 대해서 몇가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民正黨側에서 말하기를 告發하지 아니하고 또 證人으로서 出席을 要求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書面質疑와 答辯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意見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本特委의 調査方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出席을 要求해서 거기에 不出席했고 또 同行命令을 執行하고 그것에 不應했을 때에는 그 行爲時마다 違法事由의 犯罪行爲가 成立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미 犯罪行爲가 成立한 것입니다.

이제 成立한 犯罪로 認定할 때에는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 의해서 義務條項으로서 告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告發하는 문제하고 앞으로 어떤 調査方法이 적당하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民正黨에서 말한 이 調査方法을 書面으로 하기 위해서 告發하여서는 안된다는 理論은 成立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 崔圭夏證人이 出席할 수 없다고 한 이유중의 하나 이미 張石和委員이 지적한 이외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國家의 機密이기 때문에 出席해서 證言할 수 없다 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告發條件인 不出席 또는 同行命令의 執行不應이 정당하냐 아니하냐 하는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3條와 4條에 의한 경우에만 이 證人이 證言을 거부하거나 出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崔圭夏씨의 不出席事由書中에는 民事訴訟法所定의 不出席事由를 證言拒否事由로 들고 있으나 그것은 지난번에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서 刑事訴訟法 第148條 또는 14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에는 刑事訴訟法이나 民事訴訟法에서 말하고 있는 證人不出席 내지는 證言拒否事由를 전부 變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民事訴訟法을 특히 이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서 적용한다 하는 規定이 없는 이상은 民事訴訟法은 論議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3條에 의하면 刑事訴訟法에 두개의 경우에는 證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近親 즉 證言해야 될 事項에 관계되는 사람과 親族關係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證言을 거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辯護士나 醫師나 宗敎의 職에 있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경우에 秘密에 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崔圭夏씨의 경우에는 그 刑事訴訟法의 148條 또는 149條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法律에 의한 證言拒否事由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로서의 秘密은 이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第4條 公務上秘密에 관한 證言 書類의 提出에 관한 規定으로서 「國會로부터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證言의 要求를 받거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大統領이라는 公務員의 職에 있었던 것을 事由로 해서 證言拒否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張委員이 이미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이 軍事 外交 對北關係 國家機密에 관한 事項으로서 그 다음 그 發表로 말미암아 國家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條件이 있어야 되고 그 점에 관해서 主務部長官(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當該官署의 長)이라 되어있습니다. 大統領의 職에 있었던 者이기 때문에 現職大統領인 盧大統領이 이 점에 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國家의 機密이기 때문에 이 崔圭夏大統領이 大統領으로서의 知得한 國家機密事項을

證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節次를 거치지 않은 이상은 國家機密을 이유로 한 證言拒否는 역시 정당한 이유가 成立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와같은 現職大統領의 召命이 있다 하더라도 國會가 그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國務總理가 聲明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聲明에 대해서 역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때에는 그 聲明을 7日以內에 政府에서 發表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경우에도 國家機密을 이유로 한 證言拒否는 정당한 이유가 성립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명백히 해둡니다.

그 다음에 前職大統領이 國會에서 證言한 先例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先例에 대해서도 명백한 法規가 없을 때 선례를 따지는 것입니다. 前職大統領이라 하여 證言에서 제외된다. 즉 證人으로서의 出席要求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法規가 없는 이상은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해서 선례가 적용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선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당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와 같은 중대한 國家運命을 좌우할만한 眞實糾明의 자리에서 바로 그 大統領만이 알 수 있었던 事項으로 그 眞實을 밝히는 것이 國家의 利益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先例를 스스로 그 證人자신이 수립하는 先例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先例가 없다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조금전에 民正黨側에서 前職大統領을 告發하는 경우에 憲政史에 汚點을 남긴다는 發言을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憲政史에 汚點을 남기는 發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 歷史에서 경계로 삼기 위해서 國會가 적법하게 調査特別委員會를 만들고 調査特別委員會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業務를 처리하는 것은 바로 憲政史에 있어서 꽃을 피우는 일은 될 수 있을지언정 汚點을 남기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告發해야 될 사항을 告發하지 아니한 것이 汚點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出席해야 될 사람이 出席하지 아니하는 崔圭夏씨의 行爲가 汚點이 되었으면 되었지 國會가 이 告發을 하는 것이 汚點이 된다는 말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즉 崔圭夏씨에 대한 證人訊問節次가 우리 當委員會의 결정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國政을 責任지고 있는 4黨의 代表領袖會談의 年內終結을 하자 하는 그러한 合意精神에 따라서 그것을 존중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行하지 아니한 行爲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의미에서 法的인 處理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만약 다시 書面質問을 하고 이미 書面質問要旨는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書面質問을 하고 書面答辯을 하겠다 하는 것은 年內에 종결한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이 國政調査를 技巧的으로 拒否하겠다는 意思表示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事由가 없다고 보아서 이 告發決議는 議決해야 된다는 贊成討論을 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다음은 金泳鎭委員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泳鎭委員 오늘 아침 10時에 聽聞會場에서 당연히 崔圭夏前大統領이 證人으로 出席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던 많은 國民들의 기대가 무산됐습니다. 證人席이 텅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國民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處事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과 분노를 우리는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國民들은 땀흘려서 소위 모은 자기의 財産中에서 일부를 털어서 소위 血稅를 가지고 前職大統領에 대해 이 禮遇에 관한 特例法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警護員을 주고 또 秘書를 주고 年俸을 주어서 우리 國民으로서는 최대의 禮遇를 다하고 있습니다. 前職大統領이라고 그래서 國民의 血稅에 의한 禮遇만 타 먹고 앉아서 이런 國民의 소위 熱火와 같은 요구를 무시해도 좋다는 그런 法은 없습니다. 오늘 本特委가 이 國民輿望과 배치되는 행위를 한 前職大統領에 대해서 소위 告發을 決議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國民의 정서와 감정은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證人으로 불참을 하면서 國益損傷 운

운 말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참된 國益이며 國民輿望인가를 아직도 이 歷史의 敎訓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證人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前職大統領이 在職中의 일로 인해서 國會 特委에 出席證言함은 3權分立原則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하고 운운했습니다.

崔圭夏前任大統領은 자신이 스스로 3權을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구나 참으로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民正黨의 代辯人은 崔圭夏大統領의 요청이 오늘 特委에 이 청문회에 불참한 행위에 대해서 요청이 당연하고 불가피했다고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5共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이 罪狀이 이번 崔圭夏씨가 證人으로 출석을 해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조바심에서 그런 논평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國民의 意思에 배치되는 그런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同僚委員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本委員은 비교적 저는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特委에서 證人으로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출석에 불응한 경우 그 해당 證人에 대해서 우리는 出國禁止措置를 분명히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앞서서 우리 많은 委員들이 崔圭夏씨가 證人으로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不出席者에 대한 告發內容에도 그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우리 決議와 함께 이 崔圭夏씨의 出國을 금지시키는 決議를 우리 特委가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動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고발한 다음에… 사실 오후 2時에 지금 會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싶은 얘기 많으실텐데 그러는 것을 이제 앞으로 선정이 될 諮問委員들에게 얘기해 주시기로 하고 일단 이것을 표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告發하기로 한 것을 우리가 그리고 各 野3黨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諮問委員을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에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金泳鎭委員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動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再請했습니다.

다른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그것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尹在基委員 委員長님! 案件 하나 動議하겠습니다.

崔圭夏證人에 대한 告發까지 議決되고 出國停止要請까지 議決이 된 마당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告發措置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덟차례에 걸친 出席要求同行命令에도 불응하는 崔圭夏證人을 상대로 우리 國會特委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本委員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우리가 書面質疑書 面答辯에 관한 것도 우리가 불응하고 出席證言을 요구한 이상 이제 書面質疑에 해당하는 내용을 檢察에 陳情을 내서 調査要請을 별도로 해가지고 檢察로 하여금 그 事案의 진상을 밝혀서 國會에 報告하도록 떠 넘겨버리고 말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國會가 告發해 놓고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해도 歷史의 바른 眞相糾明의 자세가 아닐 뿐더러 來年까지 끌고 가서 또 나와라 안나와라를 가지고 떠들어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4黨 合意事項에도 靑瓦臺 領袖會談精神에도 背馳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로 지금 우리가 質疑書로 要旨를 各黨이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檢察로 하여금 조사해서 國會에 報告하도록… 이 特委가 만일 解體되면 國會의 本會議에 檢察總長이 나와서 報告하도록 提案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뜻은 좋습니다마는 告發하는 취지와 이것은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諮問되시는 분들이 참작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尹在基委員 委員長님이 혼자 하지 말고 다른… 檢察의 조사도 안 시키고 말아 버립니까?

○委員長 文東煥 아니 사실을 조사하는 것하고 違法된 것을 告發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尹在基委員 다르니까 별도의 提案을 하는 것입니다.

○辛基夏委員 同僚 尹在基委員님의 動議하신 趣旨는 충분히 心情的으로 이해갈만합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이나 다른 法律 소정의 요건으로 告發할 수 있는 것은 證人의 경우에는 證言拒否 또는 出席拒否 또는 同行命令拒否 僞證 등의 절차이고 一般刑事訴訟法의 절차에 의해서 一般 다른 國民들이 告發權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國會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行政府에 대해서 拘束力이 있는 決議는 아니지마는 촉구하는 여러가지 政治的 의미의 決議를… 간혹 促求決議案을 내가지고 決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과연 그러한 내용 등을 우리 國會의 決議로써 내가지고 檢察로 하여금 調査해 달라하는 것이 國會라는 위상에서 볼 때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各 政黨 또는 다른 各 個人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우리 委員會에서 이런 내용까지 決議해가지고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尹委員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金光一委員 그 점에 대해서 意見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말씀하세요.

○金光一委員 우리가 崔圭夏證人한테 묻고자 하는 事項은 바로 光州特委를 만들어서 調査活動을 하는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國會에서 調査活動을 해서 진상을 밝히는 문제를 우리가 다른데에다가 넘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調査活動을 끝내고 나면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 法律 第15條 16條에 의해서 調査結果報告書를 만들어서 國會 本會議에 報告해야 됩니다.

그 國會 本會議에 報告할 때 結果로써 政府當局의 是正을 요구하거나 또는 告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告發하게 되고 이러한 調査結果로써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論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光州特委의 마지막 結論을 낼 때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法律上 적절하지 아니한 提案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意見이 대개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散會를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49分 散會)

○出席委員

文東煥	權海玉	康祐赫
金吉弘	辛卿植	沈明輔
安榮基	李光魯	李肯珪
李敏雙	劉守鎬	鄭東鎬
鄭昌和	金泳鎭	辛基夏
李海瓚	趙淳昇	趙贊衡
崔鳳九	金光一	朴泰權
吳景義	李仁濟	張石和
金文元	金仁坤	尹在基

○委員아닌出席議員

金令培 趙洪奎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陳在勳

立法審議官 金永善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眞相調査特別	朴炯太	康祐赫	民主正義黨

12月30日字